#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27 발의연월일 : 2025. 1. 15.

발 의 자: 엄태영·주진우·서범수

박덕흠 • 서천호 • 박형수

유상범 • 강명구 • 조지연

박정하 • 고동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민과 임업인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 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u>2025년 12월</u>	<u>2028년 12월</u>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u>31일</u>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	
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에만 적용한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